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8-39호

금호제14-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370호(2009.09.24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0.01.28. 금호제14-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 인가되어, 성동구 고시 제2014-16호(2014.02.06.)로 사업시행인가, 성동구 고시 제2016-107호(2016.11.17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금호제14-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18년 3월 29일

성 동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주택재개발사업, 금호제14-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: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480번지 일대

나. 면 적: 5,127.20m²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: 금호제14-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주은

나. 주 소: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3가길 21, 3층(금호동4가)
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: 2018년 3월 29일
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1) 건축계획

구 분	대지면적(m ²)	동수	층 수	세대수	연면적(m ²)	비 고
공동주택(분양)	4,029.40	2동	지하3층~지상16층	108	15,039.4710	

2) 토지이용계획

계(㎡)	건축시설의 대지			정비기반시설			그 밖의 용 도
	소 계	공동주택	그 밖의 건축시설	소 계	도 로	공 원	
5,127.20	4,029.40	4,029.40	-	1,097.80	872.20	225.60	-

나. 권리자별 관리처분 계획

대상자	분 양			청 산	수 용	협의매수	그 밖의 처 분
	소 계	공동주택	그 밖의 용도				
76인	75인	75인	-			1인	-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(도시계획시설포함)

구 분	용도폐지		신 설		
	계	도 로	계	도 로	공 원
규모(㎡)	935.70	935.70	1,097.80	872.20	225.60

라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공급세대수			그 밖의 건축시설
	계	59.5075㎡	84.0492㎡	
계	108	78	30	-
조 합 원	75	53	22	-
보류시설	3	3	-	-
일반분양	30	22	8	-

마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: 2018년 4월 이후

6.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성동구청 주거정비과(☎.02-2286-6571)와 금호제14-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.02-2291-5009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